

# 비디오테이프 제조・배포금지가처분신청

채권자 (주)〇〇프로덕션

○○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대표이사 〇〇〇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◇◇◇

○○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목적물의 가액 ○○○원

가처분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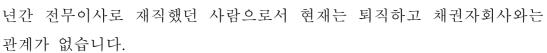
피보전권리의 요지 불법판권 비디오테이프 제조·배포금지청구권

#### 신 청 취 지

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취득한 무협시리즈 비디오 "◎◎"을 제조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## 신 청 이 유

1. 채권자는 20○○. ○. ○. 주식회사 ○○프로덕션을 설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등록 제 ○○○호로 등록한 비디오물제작업체로서 현재까지 약 20여편의 영화를제작·수입하여 비디오테이프로 출시한바 있고, 채무자는 채권자회사에서 약 1





- 2. 채권자는 20○○. ○. ○. 홍콩 ○○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"◎◎"이라는 무협 영상물을 수입하여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마치고 시중에 배 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.
- 3.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의 주택에 설치해놓은 비디오테이프 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채권자가 제작·출시한 "◎◎"을 무단으로 대량복제, 배포를 하면서 흡사 "◎◎"에 대한 제작, 배포권리가 채무자에게 있는 양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,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4. 채권자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즉각 중지를 요구하였고, 사과 및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.
- 5. 만일,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위 제품을 배포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, 지난 수년간 쌓아온 채권자의 신뢰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- 6. 한편,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 제조·배포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 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 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소 명 방 법

소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
 소갑 제2호증 비디오물제작자등록증
 소갑 제3호증 수입계약서
 소갑 제4호증 비디오물등급분류필증
 소갑 제5호증 통고서(내용증명우편)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각 1통1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

2000. 0. 0.

위 채권자 (주)〇〇프로덕션 대표이사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

## 목 록

제 목:◎◎

원 제 작 자 : 홍콩○○사

등 급: 연소자관람가

제작연월일 : 2000. 0. 0.

복 제 : 주식회사 ◎◎프로덕션

제조원등록번호 : 문화체육관광부 제〇〇〇호

심 의 번 호 : ㅇㅇㅇ - ㅇㅇ

상 영 시 간 : 30분

수 량:10개. 끝.

제출법원	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을 관할하는 지방법원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목록 5부정도 첨부)					
불복절차 및 기간	(채권자)  ·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1조 제2항)  ·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 민사소송법 제444조) (채무자)  ·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3조), 본안의 제소명령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7조) 등  ·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 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·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.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 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					
비 용	·인지액 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 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	

## ※ 집행절차

가처분신청	→ 2~3일후	담보제공명령서 수령(공탁명령)	<del>→</del> 5일내	보증보험사와 지급 보증위탁계약체결 ※ 지참서류등 1. 가처분신청서사본 2. 주민등록표등본 3. 담보제공명령서 4. 도장	$\longrightarrow$
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 에 제출 (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)	<i>→</i>	결정문 2부 수령 (채권자, 채무자각1부)	$\longrightarrow$	1.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(집행관실에 비치된 집 행위임장 및 약도작성) 2.수수료 납부 및 부배정 3.담당부 집행일시 지정	$\longrightarrow$



- 1.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
- 2. 집행관 공시서부착
- 3. 집행관 집행조서작성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